

「학업성적 평가 내규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5. 10. 13. 개정 판 (시행 2025. 9. 1.) → 2026. 5. 18. 개정 판 (시행 2026. 6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70/compare?from=1703&to=1750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3:07:29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평가방법)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, 과제, 중간,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 다만, 실험, 실습, 실기,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.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A 이상: 30% 이하 B ~~≧~~ B ~~≦~~ 70%+ 이하: 30% 이상 1. <삭제>(개정 2020-10-12) 2. <삭제>(개정 2020-10-12) 3. <삭제> (개정 2017-07-01) 4. 성적 분포 비율은 [별표1]과 같이 한다. <개정 2025-10-13> [표1] 성적평가 비율표 평가방식 평가비율 합계 과목 범위 A B C D F 상대평가 0~30% 0~70% 30~100% 100% 일반과목, <u>내국인,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(내국인)</u> 내국인,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(내국인) 별도상대평가 0~50% 50~100% 100% 실험실습과목(100%) 단체실습과목 *(연극, 합창(주) 등) 개별지도 과목 *(졸업논문, 졸업작품, 전공실기, 전문실기, 집중수업,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) 외부위탁(특별프로그램)의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교직 및 성경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과목 <u>엑티브러닝 수업(SU-AL),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</u>	제3조(평가방법)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, 과제, 중간,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 다만, 실험, 실습, 실기,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.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A 이상: 30% 이하 B ~~≧~~ B ~~≦~~ 70%+ 이하: 30% 이상 1. <삭제>(개정 2020-10-12) 2. <삭제>(개정 2020-10-12) 3. <삭제> (개정 2017-07-01) 4. 성적 분포 비율은 [별표1]과 같이 한다. <개정 2025-10-13> [별표1] 성적평가 비율표 평가방식 평가비율 합계 과목 범위 A B C D F 상대평가 0~30% 0~70% 30~100% 100% 일반과목, <u>이론이 포함된 실험/실습/실기과목,</u> 내국인,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(내국인<u>학생에게 적용</u>) 별도상대평가 0~50% 50~100% 100% 실험/실습/실기/설계 과목 (100%) 단체실습과목 *(연극, 합창(주) 등) 개별지도 과목 *(졸업논문, 졸업작품, 전공실기, 전문실기, 집중수업,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) 외부위탁(특별프로그램)의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교직과목 <u>핵심교양 II 수업</u>

현행	개정안
*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*100% 외국인 과목 기초교양 *(사고와 표현, 글로벌 영어-일반반) 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 *약학과,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 절대평가 0~100% 100% 캡스톤디자인 수업 *인정과목에 해당 기초교양 *글로벌 영어-고급반 핵심교양 수업 I *인성과 사회, 종교와 인생, 생활과 윤리, 역사와 문화 MVP혁신교수법 SU-BFFL교수법 영어·일본어·중국어 원어 수업 (학과 인정전공과목) 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,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(외국인) Pass or Fail 100% 학과 지정 과목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. 1.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.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)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+ 30%이하 0명 $43 \times 0.3 = 12.9$명(12명) + 0%-70% 0명 $43 \times 0.7 = 30.1$명(30명) 이하 30%이상 $43 \times 0.3 = 12.9$명(13명) $43 \times 0.7 = 30.1$명(30명)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(중간시험 및 기말시험), 과제 및 발표, 출석,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	SU-AL교수법 전공수업 *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*글로벌사회혁신원 수업 이수 시 적용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*100% 외국인 과목 기초교양 *(사고와 표현, 글로벌 영어-일반반) 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 *약학과,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 절대평가 0~100% 100% 캡스톤디자인 수업 *인정과목에 해당 기초교양 *글로벌 영어-고급반 핵심교양 수업 I *인성과 사회, 종교와 인생, 생활과 윤리, 역사와 문화 SU-MVP교수법 2.0에 의한 수업 ·MVP혁신교수법 ·SU-BFFL교수법 ·SU-HyFlex교수법 ·SU-Colab교수법 영어·일본어·중국어 원어 수업 (학과 인정 전공과목) 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,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(외국인학생에게 적용) Pass or Fail 100% 학과 지정 과목 *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성적평가 별도상대평가 적용 *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 말함(원어민 및 한국계 외국인 포함) * 한국인 교원이라 함은 수업의 80%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함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 지침 제 10조 6항) 단, 영어영문학과외의 외국어 강의 성적평가 방법은 학업성적평가 내규에 준함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. 1.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.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)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

현 행	개 정 안
부여한다. <개정 2020-10-12> ㉔ 시간제등록 학생,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.	최대인원 + 30%이하 0명 $43 \times 0.3 = 12.9$명(12명) + 0%-70% 0명 $43 \times 0.7 = 30.1$명(30명) 이하 30%이상 $43 \times 0.3 = 12.9$명(13명) $43 \times 0.7 = 30.1$명(30명)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(중간시험 및 기말시험), 과제 및 발표, 출석,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. <개정 2020-10-12> ㉔ 시간제등록 학생,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업성적 평가 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㉔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
A 이상: 30% 이하 B $\equiv$ B+: 0 $\equiv$ 70% C+ 이하: 30% 이상

1.

2.

3.

4. 성적 분포 비율은 [별표1]과 같이 한다.

[별표1] 성적평가 비율표

평가방식

평가비율

합계

과목 범위

A

B

C

D

F

상대평가

0~30%

0~70%

30~100%

100%

일반과목, 이론이 포함된 실험/실습/실기과목,
내국인,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(내국인학생에게 적용)

별도상대평가

0~50%

50~100%

100%

실험/실습/실기/설계 과목 (100%)

단체실습과목

*(연극, 합창(주) 등)

개별지도 과목

*(졸업논문, 졸업작품, 전공실기, 전문실기, 집중수업,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)

외부위탁(특별프로그램)의 실험실습과목

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

교직과목

핵심교양 II 수업

SU-AL교수법 전공수업

*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

서비스러닝 전공 수업

*글로벌사회혁신원 수업 이수 시 적용

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

*100% 외국인 과목

기초교양

*(사고와 표현, 글로벌 영어-일반반)

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

*약학과,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

절대평가

0~100%

100%

캡스톤디자인 수업

*인정과목에 해당

기초교양

*글로벌 영어-고급반

핵심교양 수업 I

*인성과 사회, 종교와 인생, 생활과 윤리, 역사와 문화

SU-MVP교수법 2.0에 의한 수업

·MVP혁신교수법

·SU-BFFL교수법

·SU-HyFlex교수법

·SU-Colab교수법

영어·일본어·중국어 원어 수업 (학과 인정 전공과목)

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

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

내국인,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(외국인학생에게 적용)

Pass or Fail

100%

학과 지정 과목

*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성적평가 별도상대평가 적용

*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
말함(원어민 및 한국계 외국인 포함)

* 한국인 교원이라 함은 수업의 80%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함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
시행 지침 제 10조 6항) 단, 영어영문학과외의 외국어 강의 성적평가 방법은 학업성적평가 내규에 준함

부 칙

이 내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